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5. 27 선고 2019가단10379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중섭

피 고 A

소송대리인 창원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백경석

변론 종결 2021. 3. 25.

판결 선고 2021. 5. 27.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2018. 12. 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8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2018. 12. 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32,142,85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117,142,85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2021. 2.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 일시를 '2016. 12. 30.'로 기재하고 있으나, 원고는 종전 2020. 9.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 일시를 '2018. 12. 3.'로 주장하였고, 피고도 제6회 변론기일(2020. 9. 24.)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이가 2018. 12. 3. 체결된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원고가 위 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증거(갑 제20, 21호증)에 비추어보더라도 실제 상속재산분할협의 일시는 2018. 12. 3.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 '2016.12. 30.' 기재는 '2018. 12. 3.'의 오키인 것으로 설행하여 판단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의 연대보증 하에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보증기한이 연장된 부분까지 반영한 것이고,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보증일자에 대출기관인 중소기업은행에게 신용보증약정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순번	보증번호	보증일자	보증금액	대출과목	보증기한
1	D	2015. 7. 23.	100,000,000원	중소기업자금대출	2018. 7. 20.까지
2	E	2016. 7. 11.	218,500,000원	중소기업자금대출	2018. 7. 10.까지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0조에 의하면,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소외 회사, B의 상환 범위는 원고의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이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연 10%)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에 든 비용 등이다.

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2017. 12. 21. 소외 회사에 대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8. 4.30. 중소기업은행에게 322,611,289원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적절차비용 899,589원도 지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8. 5.경 B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가합10331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5. 8. "B는 원고에게 323,510,878원(= 대위변제금322,611,289원 + 법적절차비용 899,589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322,611,28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8. 4.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18. 6. 8.까지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의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F가 2016. 12. 30.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인 배우자 B(상속분 3/7), 자녀들인 G 및 피고(상속분 각 2/7)는 2018. 12. 3.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각 '이 사건 제1부동산', '이 사건 제2부동산'으로 칭한 다)에 관하여 이를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2. 4.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31.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6. 12.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내지 17, 20, 2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B는 원고에게 323,510,878원(= 중소기업은행 대위변제금합계액

322,611,289원 + 법적절차비용 899,589원) 및 그중 중소기업은행 대위변제금 322,611,28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8. 4.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B의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지만,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B의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소외 회사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소외 회사 및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지 아니한바, B가 자신의 망F의 상속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B의 지분범위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

1)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때에는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주택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주택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일부 상속인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취득한 수익자로 하여금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서 지분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7. 7. 26.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1, 을 제4,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H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는 2016.12. 2.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임차인 I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 7,000만 원, 기간을 2016.12. 30.부터 2018. 12.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위 임차인이 2016. 12. 30.자로확정일자를 받고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2019. 1. 11. 퇴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이루어진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3억 7,000만 원은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물반환을 명할 수 없고 사해행위를 일부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한편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1.

2.경의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시가는 6억 2,5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변론종결일 현재의 시가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6억 2,500만 원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3억 7,000만 원을 공제한 2억 5,500만 원 중 B의 상속분(3/7)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8,500만 원이 가액배상의 범위가 된다.

2)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가)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 당시 이 사건 제2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J조합, 채권최고액 억 1,700만 원인 2005. 3. 30.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였던 사실,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 이후 2019. 2. 28. 당시까지의 피담보채무액 1억 5,500만 원이 변제되어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대출 당시부터 위 변제일까지의 피담보채무액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해행위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이후 변제 등을 이유로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므로,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수 있을 뿐인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이 사건 제2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J조합의 근저당권이 위와 같이 사해행위 이후 변제로 인하여 말소되었으므로, 위 피담보채무액은 공동담보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시가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미 이 사건 제2부동산에는 임차인 K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위 임대차보증금 상당액 또한 공동담보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시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5조 제2항에 따라 대항력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당해 부동산의 경매절차 등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K은 F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3.1. 30.부터 2년으로 정하여 상가 건물인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임차한 이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온 사실, 위 임대차기간이 최종 만료된 2019. 1. 31.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인 L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아 같은 날 K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한 사실, K은 위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K이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임대차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라 K이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임대차는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20만원이었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항, 제6조 제4호에 따라 계산하면 월 차임을 합산한 보증금 액수는 1억 2,200만 원[= 2,000만 원(임대차보증금) + 120만 원(월세차임) × 100]이므로, 이 사건 제2부동산소재지의 우선변제를 받을 임대차보증금 기준액인 3,000만 원을 초과하여 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K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시가에 서 공제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법원의 감정인 M에 대한 감정축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9. 12. 13. 기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시가는 2억 3,0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변론종결일 현재의 시가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시가 2억 3,000만 원에서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1억 5,500만원을 공제한 7,500만 원 중 B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32,142,857원[= (2억 3,000만 원 - 1억 5,500만 원) × 3/7, 원 미만 버림]이 가액배상의 범위가 된다.

라. 소결론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B의 3/7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상속재산분할협의를 8,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B의 3/7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32,142,857원의 한도내에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사해행위

일부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117,142,857원(= 8,500만 원 + 32,142,85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액이 위 117,142,857원을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권홍